

Q & A

궁금합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를 항상 관리하고 있으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정지시켜 놓은 도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발생시 화재경보시스템의 경보체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적용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A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35조 제6호 소화설비 추가 조항에는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설비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보험료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 손해방지의무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방화셔터 등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경감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했을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그 손해액만큼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스계 약제인정 가운데 'SNAP Program 인정'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A SNAP(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 Program은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대기청정법의 규정에 따라 CFC 및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서 사용이 가능

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발효시킨 것입니다.

SNAP Program은 시스템 및 소화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청정약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소화성능의 목적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및 독성 등에 관한 평가 기준으로 ODP, GWP, ALT, NOAEL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Q 기존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소화설비 등 할 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요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A 화재보험 할인율 적용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과 관계없이 차회계년도 계약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소화설비할인 적용대상계약은 소화설비할인 검사일 익일부터 차회계년도 4월 1일 전날까지 사이에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을 포함한다'고 화재보험 요율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차회계년도에 적용할 할인율을 당해년도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Q 지하층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주수신반이 보조수신반의 제연 급·배기팬 및 유도등 등에 관한 조작스위치 제어기능이 없으며 건물 소유주가 구분이 되는 경우,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별개 동의 구분은 건물 소유관계가 아니라 시설관리체계에 따라야 합니다.

종합방재반 역할을 하는 주수신반은 보조수신반과 상호연동되도록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설치된 모든 수신반은 별도의 상주

인력이 계속 감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재실에서 통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시설의 개선이 어렵다면 별개의 상주감시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Q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같은 구내에 여러 건물이 각각 다른 때에 준공되었을 경우 점검시기 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 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 제외,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에 대해서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는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며,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동일한 대지 안에 동일한 건축물 소유주의 건물로 사용승인일이 다른 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